

## 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)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[소규모펀드(1년) 여부 공시]

펀드명	발생일자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-	-	-	-	-

※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)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[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]

펀드명	발생일자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KB이머징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(채권)	2011-04-08	3,067,677,699	3,304,164,883	1077.09
KB이머징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(채권)	2011-04-08	280,901,852	295,856,402	1053.24

※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)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[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 공시]

펀드명	발생일자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-	-	-	-	-

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